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의 범위,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함

나.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다. 치매공공후견법인을 인정·고시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함(안 제11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11조의2)

마.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를 “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6개월”을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후견인으로서의 후견사무
2. 후견감독사무 지원
3. 후견사무 및 후견감독사무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사무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심사 관련 자료,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자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

8.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
9.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자 의료지원 관련 자료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관련 자료
1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자료
14. 그 밖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요건(제11조제1항 관련)

1. 법인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 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 나. 성년후견 관련 사업 수행을 정관에 명시한 법인
2. 인력기준: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전담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및 1년 이상의 성년후견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 다.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친족후견 제외)으로서 1년 이상 활동을 하였거나,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법인의 종사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성년후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서 1년 이상의 성년후견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u> <u>그 -----</u> <u>-----.</u>

③ ~ ⑤ (생 략)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 · ② (생 략)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u>6개월로 한다.</u>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생 략) 2. <u>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u> <u><신 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2년 이내---</u>.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법인</u> ② <u>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1. 후견인으로서의 후견사무</u> <u>2. 후견감독사무 지원</u> <u>3. 후견사무 및 후견감독사무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사무</u>
---	--

<신 설>

제11조의2(자료 제출 요구의 범

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심사 관련 자료,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자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장
기요양급여 관련 자료

8.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권자와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

9.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관
련 자료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자 의료지원 관련 자료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관련 자료

1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
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자료

14. 그 밖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
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

<신 설>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

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
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
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
료원에 위탁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별표 1

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 -----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32